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120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

담당변호사 고규정, 안정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5. 25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1987. 3.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, 그 이후인 1998. 11. 12.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제해성

별지